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종합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전부개정공고 안내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4190(2014.11.28)

2. 위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붙임 : 1. 주요개정내역

2. 공고전문(전부개정)

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/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재신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584 (2014.12.01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js@kha.or.kr